



제 42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36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5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필요성	5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11
3.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분류	13
가. 디지털자산의 정의	14
나. 디지털자산의 분류	17
4. 디지털자산업의 유형별 규제체계 도입	23
5.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34
6. 디지털자산업자 지배구조	42
7. 디지털자산업자 신용공여	47
8. 이용자 위탁 디지털자산의 보호	50
9. 디지털자산의 발행규제	53
10.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	57
11.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치 및 기능	6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민병덕의원 등 37인

나. 제 안 일 : 2025. 6. 11.

다. 회 부 일 : 2025. 6. 12.

II. 제안이유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또한 국제사회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 · EU · 일본 등은 발행 · 유통 전반에 걸친 인허가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회계 기준 마련 등을 이미 도입함.

그러나 국내법상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로, 발행 · 유통 · 공시 · 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 · 등록 · 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 · 공시 · 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

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나.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권리 및 책무, 국가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다.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여,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미인가·미등록·미신고 영업행위를 금지함(안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마. 디지털자산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무, 경영건전성, 전산안정성 등을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59조까지).

- 바. 디지털자산업자가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준수사항을
공통 영업행위 일반원칙과 디지털자산업별 영업행위 원칙 등을 규
정함(안 제60조부터 제101조까지).
- 사.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법률로서 허용하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의 경우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함(안 제102조부터 제108조까지).
- 아. 디지털자산시장의 개설,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유지심사·
거래지원종료 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공시사항 등에 대해서 규정함(제109조부터 제114조).
- 자.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등을
허용함(안 제115조부터 제121조까지).
- 차. 디지털자산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한국디지
털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그 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122조부터 제1
34조).
- 카.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
한 등을 규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8조까지).
- 타. 디지털자산업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9조부터 제155조까지).

과.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56조부터 제162조까지).

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3조부터 제171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필요성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자산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현물 ETF 등의 금융투자상품이 출시되면서 기관의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디지털자산의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있음.
- 2024년말 기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가총액은 4,989조원(코인게코 기준)으로, 2024년 6월말(3,125조원) 대비 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¹⁾
-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시가총액은 107.7조원(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제출자료) 수준이며, 일평균 거래규모는 7.3조원, 거래가능 이용자는 9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²⁾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5. 5. 20.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5. 5. 20.

[표 1]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시장 주요현황

구분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증감(율)
1. 가상자산 거래업자			
일평균 거래규모	6.0조원	7.3조원	+1.3조원(+22%)
총영업손익	5,900억원	7,415억원	+1,602억원(+28%)
원화예치금	5.0조원	10.7조원	+5.7조원(+114%)
2. 가상자산 관련			
시가총액	55.3조원	107.7조원	+51.2조원(+91%)
가상자산 종목 수	1,207개	1,357개	+150개(+12%)
- 중복상장 제외시	554종	598종	+44종(+7.9%)
단독상장 가상자산 종목 수	285개	287개	+2개(+0.7%)
가격변동성 ((최고가-최저가)/최고가)	70%	68%	△2%p
3. 이용자 일반			
거래가능 이용자	778만명	970만명	+192만명(+25%)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	30대	30대	-
1백만원 미만 보유	567만명	684만명	+118만명(+21%)

주1: (조사대상) 25개 가상자산사업자(17개 거래소(거래업자), 8개 지갑·보관업자)

주2: (조사방법) 사업자가 작성·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

주3: (대상기간 및 기준시점) 2024. 7. 1. ~ 2024. 12. 31. / 2024. 12. 31.

(자료: 금융위원회, “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5. 5.)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이전까지 디지털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령은 없었으나, 2020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³⁾의 권고를 바탕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규제 측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

3)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정립하고, 상호 평가를 통해 회원국의 기준 이행을 감독하고 있음.

래정보법”이라 함)을 개정한 바 있음.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20년 3월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거래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

- 2025년 8월 기준으로 총 27개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여 수리된 상황임.

[표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2025. 8. 18. 기준)

연번	서비스명	법인명	연번	서비스명	법인명
1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15	코다 (KODA)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에셋
2	코빗	주식회사 코빗	16	케이닥 (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3	코인원	주식회사 코인원	17	오하이윌렛	(주)헥슬란트
4	빗썸	주식회사 빗썸	18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5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19	오아시스 거래소	(주)가디언홀딩스
6	고팍스	주식회사 스트리미	20	커스텔라	주식회사 마인드시프트
7	BTX	차일들리 주식회사	21	코인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
8	포블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22	인피닛블록	주식회사 인피닛블록
9	코어다스	(주)코어다스	23	다에스알브이랩스	(주)다에스알브이랩스
10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24	비덱스	비덱스 주식회사
11	오케이비트	주식회사 포리스다스 코리아리미티드	25	INEX (인엑스)	(주)인피니티 익스체인지코리아
12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처스	26	돌핀 (Dolfin)	(주)웨이브릿지
13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27	바우맨	(주)해피블록
14	보라비트	주식회사 뱅코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2023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라 함)을 제정하였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준수하여야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1단계 법률로서, 사업자 및 가상자산 발행·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우리 위원회는 2023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①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②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등의 사항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위원회⁴⁾의 논의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시 필요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상장·공시제도 마련,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 주요 과제들을 선정·논의하여 202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⁵⁾.

□ 이러한 배경하에, 동 제정안은 기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보완하여 디지털자산을 유형화하고, 업무담위별로 진입·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고,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관한 규제를 보다 명확히 하며, 스테이블 코인 등 현행 규제체제에서 포함하지 못한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⁶⁾.

○ 이러한 제정안의 제정 취지는 업권별 규제 도입으로 규제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안에서 다양한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성장을 도모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2025. 1. 15.

6) 제정안은 부칙(제5조)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폐지하고 있음.

□ 아래에서는 제정안의 내용 중 현행 규제체계와 비교할 때 새롭게 도입되거나 기존 제도를 크게 변화시키는 내용으로서, 선제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 및 관련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음.

2.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제정안은 총 10개편에 걸친 171개 조의 본칙과 5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됨.

○ 제1편은 총칙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디지털자산·디지털자산업·디지털산업자·디지털자산시장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제2편은 이용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와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편은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등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4편은 디지털자산업자의 지배구조, 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자산 보호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제5편은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제6편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의 유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제7편은 한국디지털산업협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그 밖에, 제8편은 감독 및 검사, 제9편은 보칙, 제10편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표 3] 「디지털자산기본법」 구성체계

편	주요내용
제1편 총칙 (§1 ~ §10)	■ 목적,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업, 디지털자산시장 등 정의
제2편 이용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11 ~ §14)	■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 이용자·국가·디지털자산업자의 책무
제3편 디지털자산 산업의 육성 및 진흥 (§15 ~ §18)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
제4편 디지털자산업 (§19 ~ §101)	■ 인가·등록·신고 ■ 디지털자산업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 건전경영 유지 ■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5편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 (§102 ~ §114)	■ 디지털자산발행신고서 ■ 디지털자산시장
제6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115 ~ §121)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시세조종 ■ 부정거래행위
제7편 한국디지털자산협회 (§122 ~ §1134)	■ 한국디지털자산협회 ■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 시장감시위원회
제8편 감독 및 처분 (§135 ~ §134)	■ 명령 및 승인 ■ 검사 및 조치 ■ 조사 ■ 과징금
제9편 보칙 (§135 ~ §162)	■ 신고자 보호, 권한 위임·위탁, 디지털자산 분쟁조정
제10편 벌칙 (§163 ~ §171)	■ 벌칙, 몰수·추징, 양벌규정, 형벌 등의 감면, 과태료
부 칙	■ 시행일, 적용례,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 특례, 타법 폐지

3. 디지털자산의 정의와 분류

□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디지털자산) ①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이란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만,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 주식등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6.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7.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디지털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2. 일반 디지털자산 ③ 이 법에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란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율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일반 디지털자산”이란 제3항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가. 디지털자산의 정의

□ 제정안 제3조제1항은 ‘디지털자산’을 정의하면서 그 요건으로 ① 분산원장에 ② 디지털형태로 표시되는 ③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④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⑤ 교환될 수 없거나 기존의 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중에서 교환될 수 없거나 기존의 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⁷⁾하고 있음.

- 제정안은 이러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유사하게 ‘디지털자산’을 정의하려는 것으로 보임.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채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 4] 가상자산(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디지털자산(제정안) 정의 비교

가상자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디지털자산 (제정안)
·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 교환될 수 없는 것, 기존의 전자화폐·전자등록주식등 제외	

○ 한편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정의하면서 ‘분산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가상자산규제법인 MiCA⁸⁾의 가상자산 개념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MiCA는 가상자산(crypto-asset)의 개념을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또는 저장되는 가치 또는 권리를 디지털로 표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분산원장’이라는 용어를 활용⁹⁾한 입법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¹⁰⁾됨.

8)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9) 다만, 대법원은 판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에서 가상자산을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시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10)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에서는 분산원장을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특성으로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peer)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하여 공유하며, 이 거래 정보는 분산·관리하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최근 분산원장 기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입법례¹¹⁾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독일에서는 분산원장을 “시간 순서에 따라 데이터가 기록되고 권한 없는 말소와 변경으로부터 데이터가 보호되는 기록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스위스에서는 ‘권리자가 발행인 도움 없이 법적 지위를 입증하고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다수 독립 참여자의 공동 관리와 같은 조치를 통해 무단 변경으로부터 무결성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할 때, 제정안의 분산원장 정의는 ① 디지털자산 등에 관한 정보, ② 시간순서, ③ 다수 참여자에 의한 공동 기재, ④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한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의 보호, ⑤ 장부 및 그 관리 체계 등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분산원장의 사전적 정의와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외국 입법례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11) 분산원장 정의에 대한 해외 입법례는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나. 디지털자산의 분류

□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과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하고, ①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면서,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② 일반 디지털자산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 주요 가상자산 거래 수단으로 성장해온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지급 결제수단으로서의 잠재력과,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음.

- 해외 주요국 동향을 보면, EU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규제법인 MiCA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는 전자화폐토큰(Electronic Money Token; EMT) 등에 대한 규제を導入하였고, 미국은 지난 2025년 7월 18일에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연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¹²⁾)을 제정하였음.

- 한국은행¹³⁾에 따르면 2025년 5월말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9억달러로, 이 중 USDT 및 USDC¹⁴⁾의 시가총액이 각각 1,531억달러(전체 대비 66.3%) 및 610억달러(전체

12)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13)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5 .6.

14) USDT 및 USDC 모두 미국 달러 가치와 연동하고 있음.

대비 26.4%)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과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수단 위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달러자산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존 화폐를 대체¹⁵⁾하여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도 확산되고 있으며, 일상 거래에서도 기존 결제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¹⁶⁾가 늘어나고 있음¹⁷⁾.

○ 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 체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가상자산과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나, 스테이블 코인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디지털자산과는 다른 규제체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과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추구하고, 지급 또는 결제를 주된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연동된 화폐 또는 자산으로 환불·교환이 용이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음.
- 우리 위원회도 지난 2023년 5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면서 향후 가상자산 관련 2단계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

15) 주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자국 화폐가치가 불안한 일부 신흥국 중심

16) Visa 및 Mastercard는 금년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 및 인프라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결제 네트워크에 통합하고 있다. 또한 홍콩 기반의 핀테크 기업인 RedotPay는 최근 테더, 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출시함.

17) 이상의 내용은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5. 6.’ 참조

회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개정안 외에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2건의 개정안¹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음.

□ 제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으로 명명하고, ① 원화 또는 외국통화의 가치와 연동되고, ② 환불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아직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별도의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른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정의 조항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¹⁹⁾와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은 지니어스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①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설계된 것으로, ② 발행인이 고정된 금전적 가치로 교환·상환·재매입할 의무가 있고, ③ 안정적 가치를 유지할 것으로 표시하거나 합리적 기대를 제시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18)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211777),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211784)

19) 스테이블 코인 정의에 대한 해외 입법례는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유럽 MiCA에서도 전자화폐토큰을 ‘하나의 공식통화의 가치에 준거하고,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표 5]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의

국 가	명 칭	정 의
EU	전자화폐토큰 (Electronic Money Token)	■ 하나의 공식통화의 가치에 준거하고 안정적인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
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 그 발행인이 고정된 금전적 가치(고정된 금전적 가치 상당액으로 표시된 디지털자산은 제외)로 교환, 상환, 재매입할 의무가 있고, ■ 발행인이 고정된 금전적 가치에 대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한다고 명시하거나 합리적인 기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 공식통화, 예금, 증권이 아닌 것

(자료: 금융위원회)

- 구체적으로 보면, 제정안의 스테이블 코인 정의는 원화·외화 가치와의 연동성, 환불 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① 단일통화 연동, ② 지급·결제 목적 등을 정의 규정에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정안의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정의에 ‘단일한 원화 또는 외국통화의 가치와 연동’될 것을 규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이 ‘원화 또는 외국통화의 가치와 연동’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스테이블 코인이 복수의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EU의 MiCA에서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asset-referenced token),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 그 외 가상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하나의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과 달리 ‘자산준거토큰’은 복수의 법정화폐, 하나 또는 복수의 가상자산 또는 그러한 자산조합의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의미함²⁰⁾.
-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에 대해 ‘자산준거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둘째, 제정안의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정의에 별도의 사용·설계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의 조항을 참고하여 지급수단성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미국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에 ‘지급 또는 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20) 자본시장연구원, ‘EU의 가상자산시장(MiCA) 법안의 주요내용’, 2022. 9.

-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제정안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제외한 디지털자산은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에 대해서는 일반 디지털자산과 달리 발행인 인가를 요구하는 등 별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정의에 필요한 요건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디지털자산업의 유형별 규제체계 도입

□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업을 ① 매매, ② 중개, ③ 보관, ④ 집합관리, ⑤ 지갑관리, ⑥ 일임, ⑦ 자문, ⑧ 주문전송, ⑨ 유사자문, ⑩ 기타 관련업 등 10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디지털자산업 유형을 정의하려는 것임.

○ 디지털자산업 중 ① 매매, ② 중개, ③ 보관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으로, ④ 집합관리, ⑤ 지갑관리, ⑥ 일임, ⑦ 자문업은 등록 대상으로, ⑧ 주문전송, ⑨ 유사자문업은 신고 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⑩ 기타 관련업은 별도의 진입규제를 도입하지 않음.

제 정 안
제4조(디지털자산업) ①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1. 디지털자산매매업 2. 디지털자산중개업 3. 디지털자산보관업 4.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5.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6. 디지털자산일임업 7. 디지털자산자문업 8.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9.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10.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 ②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도·매수·교환(이하 “매매”라 한다)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 정 안

④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보관업”이란 타인의 디지털자산을 보관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이란 2인 이상의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대여 또는 처분에 권한이 있는 경우
2. 그 밖의 행위 성격 및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이란 디지털자산지갑에 대한 관리권한을 이용자로부터 위임받거나, 이용자에게 디지털자산지갑에 대한 접속장치 등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일임업”이란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그 이용자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자문업”이란 디지털자산의 가치 또는 매매판단(종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이란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매매에 관한 주문을 받아 디지털자산중개업자에게 전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이란 디지털자산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매매판단 또는 디지털자산의 가치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이용자가 아닌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자산 매매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외에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디지털자산업자) ①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업자”란 제4조제1항 각 호의 디지털자산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 정 안

- ②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매매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중개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보관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보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일임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자문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⑨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⑩ 이 법에서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자”란 디지털자산업자 중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⑪ 이 법에서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자”란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자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제1항, 제74조 및 제75조만 적용한다.

제19조(무인가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디지털자산업(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디지털자산일임업·디지털자산자문업·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또는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할 수 없다.

제25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디지털자산일임업 또는 디지털자산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31조(미신고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디지털자산업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또는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²¹⁾과 달리 업무의 단위를 구분하여 업무단위별 규제를 두고 있지는 않음.²²⁾

□ 한편, 제정안은 다음과 같이 디지털자산업을 ① 매매업, ② 중개업, ③ 보관업, ④ 집합관리업, ⑤ 지갑관리업, ⑥ 일임업, ⑦ 자문업, ⑧ 주문전송업, ⑨ 유사자문업, ⑩ 기타 관련업 등 10가지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별 디지털산업을 정의하고 있음.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2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표 6] 디지털자산업의 유형별 정의

	유 형	정 의
1	디지털자산매매업	■ 자기계산으로 매매 등
2	디지털자산중개업	■ 타인계산으로 매매 등
3	디지털자산보관업	■ 타인의 디지털자산 보관 등
4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 다수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운용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배분 (이용자 디지털자산 대여 또는 처분 제외)
5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 디지털자산지갑의 관리권한을 위임받거나, 이용자에게 디지털자산지갑에 대한 접속장치 등 제공
6	디지털자산일임업	■ 이용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디지털자산 운용
7	디지털자산자문업	■ 디지털자산의 가치, 매매판단에 관한 자문
8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 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매매 주문을 받아 디지털자산중개업자에게 전송
9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 유료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가치, 매매판단에 대한 개별성 없는 조언
10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	■ 위의 업종 외의 영업

□ 디지털자산업은 그 유형에 따라 기술의 특성이 다르고,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요인도 상이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디지털자산을 유형화할 경우 규제나 육성방안을 적절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디지털자산업자가 각각의 유형별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업의 유형별로 진입규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매매업, 중개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② 5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출 것,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인력과 전산설비, 물
 적 설비를 갖추는 것, ⑤ 임원 적격성²³⁾을 충족할 것, ⑥ 대주주가 충
 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⑦ 건전
 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⑧ 전산안정성을 확보할 것,
 ⑨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할 것을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자산집합관리업, 지갑관리업, 자산일임업, 자산자문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② 1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추는 것, ③ 인력을 갖추는 것, ④ 임원 적격
 성을 충족할 것, ⑤ 대주주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⑥ 건전한 재무
 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 ⑦ 전산안정성을 확보할 것, ⑧ 이해
 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할 것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23)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36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디지털자산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
 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
 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
 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
 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문전송업은 금융위원회 신고 대상으로 하면서, 신고 요건으로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업자일 것, ② 임원 적격성²⁴⁾을 충족할 것, ③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④ 전산안정성을 확보할 것, ⑤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유사자문업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 또는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음.
- 한편, 제정안은 미인가·미등록·미신고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인가 영업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미등록 영업

24)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36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디지털자산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디지털자산업자 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신고 영업행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7] 디지털자산업의 유형별 진입규제

유 형		진입요건	
1	디지털자산매매업	인가	■ 「상법」상 주식회사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 인력, 전산설비, 물적 설비 충족 ■ 임원 적격성 충족 ■ 대주주 요건 충족 - 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 전산안정성 확보 ■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2	디지털자산중개업		
3	디지털자산보관업		
4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등록	■ 「상법」상 주식회사 ■ 자기자본 1억원 이상 ■ 인력 요건 충족 ■ 임원 적격성 충족 ■ 대주주 요건 충족 - 사회적 신용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충족 ■ 전산안정성 확보 ■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5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6	디지털자산일임업		
7	디지털자산자문업		
8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신고	■ 「상법」상 주식회사,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 중 어느 하나 ■ 임원 적격성 충족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충족 ■ 전산안정성 확보 ■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9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 관련 교육 이수 ■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 이상 형 이후 5년 이상 도과
10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	-	-

□ 또한,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업의 영업행위 규제를 규율하고 있는데,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신의성실의무, 상호, 명의대여의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정보교류의 차단, 설명의무, 부당권유의 금지, 광고 등에 관한 규제를 디지털자산업자의 공통 영업행위 규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업무단위별로도 영업행위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표 8] 디지털자산업의 유형별 주요 영업행위 규제

유 형	정 의
공통	■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시 이용자 권익 우선 고려(\$60), 신의성실의무(\$61), 상호 제한(\$62), 명의대여 금지(\$63), 업무위탁 규제(\$64), 이해상충 관리(\$66), 정보교류 차단(\$67), 설명의무(\$68), 부당권유행위 금지(\$69), 광고 규제(\$70), 계약서 제공의무(\$71), 임의 입출금 차단 금지(\$72), 손해배상책임(\$73),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74), 손실보전 금지(\$75), 약관 규제(\$76), 비밀보장(\$79), 영업 폐지 공고(\$80), 임직원 디지털 자산 매매(\$81) 등
디지털자산매매업	■ 자기계약 금지(\$63), 최선집행의무(\$84), 임의매매 금지(\$85),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86), 신용공여(\$87), 예치금 보호(\$88), 디지털자산 보관(\$89) 등
디지털자산중개업	
디지털자산보관업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91), 자산 보관 규제(\$92), 보관 계약 규제(\$93) 등
디지털자산지갑관리업	■ 이용자 디지털자산 보관 금지(\$94) 등
디지털자산집합관리업	■ 수익보장 또는 손실보장, 매매권유, 신용공여 금지(\$95) 등
디지털자산일임업	■ 계약 규제(\$96), 이용자 자산 보관·예치 금지(\$97) 등
디지털자산자문업	
디지털자산주문전송업	■ 계약 규제(\$99), 이용자 자산 보관·예치 금지(\$100) 등
디지털자산유사자문업	■ 이용자 자산 보관·예치 금지(\$101) 등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	■ 설명의무(\$68), 부당권유행위 금지(\$69), 광고 규제(\$70) 등에만 적용

- 디지털자산업의 유형별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검토가 필요함.
- 첫째, 기능이나 업무가 유사한 유형의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차등 규제가 적용될 경우 디지털자산업자의 입장에서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유형의 업종으로 진입하여 규제차익을 실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은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보관업과 지갑관리업²⁵⁾, 중개업과 주문전송업²⁶⁾ 간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별도로 분류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둘째, 제정안은 다른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을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규제공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및 디지털자산시장의 건전성 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급변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신규 업종의 출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 따른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은 업무범위의 유연한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25) 지갑관리업자도 이용자의 지갑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한다는 점에서 보관업자와 동일한 위험(예: 이용자 자산 해킹 피해 우려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6) 자산중개업의 본질적 업무는 이용자의 매매주문 전달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개업과 주문전송업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며, 이 경우 두 유형 간의 규제차익을 위한 규제의 우회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입장임.

- 다만, 제정안에서는 기타디지털자산관련업에 대한 별도의 진입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영업행위 규제도 일부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공백에 따른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해당 유형의 설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자산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자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함.

제 정 안
제15조(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둔다. ②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자산업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추진상황에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디지털자산 실태조사의 시행과 공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제16조(디지털자산위원회의 조직)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대통령이

제 정 안

임명한다.

③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무원

3. 제122조에 따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장

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지명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비자 및 이용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디지털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디지털자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자산산업의 진흥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제 정 안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디지털자산위원회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디지털자산 실태조사)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현황
2.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3.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환불준비금 현황
4. 디지털자산산업의 경쟁도 평가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²⁷⁾하고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²⁸⁾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 및 가상자산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가상자산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됨.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융위원회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가상자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가상자산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정안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개편하여 대통령 직속기구로 상향하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디지털자산 기본계획(3년) 및 실시계획(1년)을 수립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안의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지명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공무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지명하는 사람,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

[표 9] 가상자산위원회(현행)와 디지털자산위원회(제정안) 비교

구분	가상자산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 소속	대통령 소속
기능	·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	·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 - 디지털자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디지털자산업 육성·진흥 - 디지털자산시장 관리·감독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관련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 - 관련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 국회 소관 상임위 지명, 디지털자산업협회장, 관련 전문가 등
위원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국회 소관 상임위가 지명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

- 제정안과 같이 현행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위원회로 변경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상향하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며, 위원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지명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전문가의 적극적인 디지털자산 정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디지털자산위원회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디지털자산 산업육성과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디지털자산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대통령·국무총리 등이 당연직으로 맡거나, 대통령이 임명·지명·위촉하고 있음.

[표 10]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2025. 6. 30. 기준)

연번	위원회	주관 부처	성격	위원장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자문	임명직
2	국가바이오위원회	기획재정부	자문	대통령
3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	국무총리
4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교육부	자문	대통령
5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국무조정실	자문	국무총리
6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	국무총리
7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국무조정실	자문	위촉직
8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문	지명직
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자문	위촉직
10	국가도서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자문	위촉직
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자문	위촉직
1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자문	위촉직
1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자문	대통령
1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자문	기획재정 부장관
15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자문	위촉직
16	국가우주위원회	우주항공청	자문	대통령
17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문	대통령
18	국민통합위원회	행정안전부	자문	위촉직
19	국정기획위원회	행정안전부	자문	위촉직
2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정안전부	자문	위촉직
21	국가물관리위원회	환경부	자문	국무총리

(자료: 행정안전부)

□ 다만, 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먼저, 금융위원회는 현행 가상자산위원회가 2024년 11월 출범하여 운영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가상자산위원회의 정착과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필요시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음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산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에서는 사무기구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무처를 두는 사례²⁹⁾, 파견·겸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기구를 두는 사례³⁰⁾, 관련 연구기관 등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례³¹⁾, 주관 부처에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사례³²⁾ 등이 있음.

29)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2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지식재산 기본법」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2조(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기관 등을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및 평가의 지원

2.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평가 및 인적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의 지원

3.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행하는 특정평가 등의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인적자원개발평가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6. 디지털자산업자 지배구조

□ 제정안은 자산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자산업자에게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3인 이상 두되,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

제 정 안
제37조(사외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 구성) ① 디지털자산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업자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디지털자산업자가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디지털자산업자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⑤ 디지털자산업자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외이사는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디지털자산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38조(감사위원회) ① 디지털자산업자(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2.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상근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주요주주

2.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3. 그 밖에 해당 디지털자산업자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디지털자산업자는 감사위원의 사임·사망 등의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감사위원의 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업자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디지털자산업자가 이 조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근감사를 둘 수 없다.

⑥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 현행 「상법」은 상장법인에 대한 사외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상법」과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규정해야 하며,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³³⁾

○ 또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³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에서도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나,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사외이

33)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①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4조(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등) ② 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34) 「상법」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37조(감사위원회) ①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단서 생략)

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음.³⁵⁾

□ 한편, 제정안은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자산업자에게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회 독립적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영진의 독단을 방지하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2조(이사회 구성) ①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이사회 구성)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각 호 생략)

제6조(적용 범위) ③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1.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2.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그 금융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 같은 법 제85조제5호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하 “투자일임재산”이라 한다) 및 신탁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형신탁의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5. 그 밖에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정안은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어떠한 사업자가 의무 부과 대상이 될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재 영업 중인 디지털자산업자의 재무현황³⁶⁾을 고려할 때, 현재 영업 중인 일부 영세한 디지털자산업자에게도 대규모 상장회사나 대형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제정안 논의과정에서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자에게 대형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표 11]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 입법례 비교

	디지털자산기본법	상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대상	디지털자산업자 (자산규모 고려 일부 배제)	상장법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금융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사외이사	■ 3명 이상 ■ 이사 총수의 1/2	<자산총액 2조원 이상> ■ 3명 이상 ■ 이사 총수의 1/2 <자산총액 2조원 미만> ■ 이사 총수의 1/4	<자산총액 5조원 이상> ■ 3명 이상 ■ 이사 총수의 1/2 <자산총액 5조원 미만> ■ 3명 이상 ■ 이사 총수의 1/4
감사위원회	■ 이사 3명 이상 ■ 사외이사 2/3 이상 ■ 회계·재무전문가 포함 ■ 사외이사가 대표	■ 이사 3명 이상 ■ 사외이사 2/3 이상 ■ 회계·재무전문가 포함 ■ 사외이사가 대표	■ 이사 3명 이상 ■ 사외이사 2/3 이상 ■ 회계·재무전문가 포함

36)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상장회사인 가상자산 사업자는 없으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적용기준(5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1개사에 불과함.

7. 디지털자산업자 신용공여

-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매매·중개·보관업자가 금전의 용자 또는 디지털자산 대여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도록 하되, 디지털자산 매매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업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을 매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의 신용공여는 제한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87조(신용공여)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금전의 용자 또는 디지털자산 대여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자산매매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을 그 디지털자산매매업자로부터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이용자에게 금전의 용자, 그 밖의 신용공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93조(보관계약 및 신용공여) ①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이용자와 보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및 디지털자산보관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보관대상 디지털자산의 종류·수량과 가격 3. 계약기간 4. 전산장애 및 해킹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보상 금액 및 방법 5. 디지털자산보관업자가 받을 보수에 관한 사항 6. 보관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금전의 용자 또는 디지털자산 대여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여 자본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적 가격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된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레버리지를 허용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신용공여(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를 허용하고 있음.³⁷⁾

○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보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서는 방법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음.³⁸⁾

□ 제정안은 가상자산 분야에서도 매매·중개·보관업자의 신용공여(금전의 융자 또는 디지털자산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다만, 디지털자산시장의 경우 자산시장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심사에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신용공여를 허용해야 한다면 「자본시장법」에서처럼 신용공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개인 이용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도화한 해외 입법례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최근 금융당국과 업계가 마련 중인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³⁹⁾의 내용과 운영 경과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2025. 8. 19.

8. 이용자 위탁 디지털자산의 보호

□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매매·중개·보관업자가 이용자의 위탁으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명부 작성·비치, 분리 보관, 실질 보유 등 보호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이용자명부에 기재된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 매매·중개업자가 작성한 경우 이용자의 소유로 추정하고, 디지털자산 보관업자가 작성한 경우 신탁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제 정 안
제89조(디지털자산의 보관) ①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한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명부에 기재된 디지털자산은 이용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하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주소(디지털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②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자기의 디지털자산과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디지털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디지털자산매매업자 또는 디지털자산중개업자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자산보관업자에게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92조(디지털자산의 보관 등) ①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이용자와의 계약에

제 정 안

따라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명부에 기재된 디지털자산은 신탁된 것으로 본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보관을 위탁하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 및 수량
- ②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자기의 디지털자산과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디지털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자산보관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전부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기술적으로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인 경우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의 보관에 관한 사항⁴⁰⁾을 규정하면서, 이용자명부에 기재된 디지털자산은 매매·중개업자가 작성한 경우 이용자의 소유로 추정하고, 보관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신탁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4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가상자산의 보관) ①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위탁하는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3. 이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이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자산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절연함으로써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사인인 디지털자산업자가 작성한 명부에 대하여 공적장부에 부여되는 권리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제정안이 이용자 명부 작성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수행주체에 따라 상이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질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유사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은 의제신탁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제정안 심사과정에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12] 유사 입법례 비교

의안 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내용
2204351	박상혁의원	2024. 9. 26.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의 상계·압류 금지
2207226	김현정의원	2025. 1. 3.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반환청구권
2209862	민병덕의원	2025. 4. 16.	이용자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규정

9. 디지털자산의 발행규제

□ 제정안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안 제104조).

○ 다만, 제정안은 외국에서 발행되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발행인 신고서 제출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02조).

제 정 안
제102조(적용범위) 이 장은 외국에서 발행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 자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4조(발행의 신고) 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그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 인력의 이력과 정보
3.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정보
4. 디지털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계획 정보
5. 총 발행량과 기간별 발행 또는 채굴량에 관한 정보
6. 이용자 보호 계획 정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발행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예측정보”라 한다)을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자산의 활용 계획에 따른 성과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발행인의 재무상태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
3. 특정한 사실의 발생 또는 특정한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발행인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상태의 변동 및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행인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발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발행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그

제 정 안

첨부서류에 이미 제출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발행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자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대표자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발행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발행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거나 이용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신고서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발행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신고 수리한 발행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모집의 경우 발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정안은 발행인이 발행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었던 ICO (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의 발행절차는 ① 발행인의 발행신고서 제출, ② 금융위원회의 심사 및 수리, ③ 금융위원회의 발행공시 등으로 구성됨.

○ 한편, 이렇게 발행된 디지털자산은 거래소의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를 거쳐 거래소에 신규 거래지원(상장)되어 유통이 이루어짐.⁴¹⁾

□ 국제적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적절한 규제의 틀 안에서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도 디지털자산 발행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41)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110조(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적격성평가) 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기 전에 제130조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신청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지원적격성평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발행인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방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의 법규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31조에 따른 거래지원규정에서 규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신청을 받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신청한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신청을 받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로부터 적격 평가를 받은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거래지원을 하지 아니하면, 적격 평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11조(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및 유지심사) 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보고서를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다만, 제정안은 외국에서 발행되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발행인 신고서 제출 의무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내 발행인과 해외 발행인 간의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관된 거래지원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므로 유통단계에서 일부 규율이 가능한 측면이 있겠으나, 외국 발행인을 통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① 해외 발행시 발행규제를 배제하는 제정안에 대하여 발행규제를 전부 면제하는 것은 이용자 피해 우려 등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고, ② 발행신고서 제출 등 발행공시 규율에 대해서도 EU MiCA의 입법례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0.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인

- 제정안은 국내에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자본금,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3조(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자격요건) 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에 대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 설립된 법인일 것 2.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5.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환불 방법 및 환불준비금 등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고 적절할 것 6.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7. 임원이 제36조에 적합할 것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누구든지 제2항제5호에 따라 발행인이 적립한 환불준비금을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환불준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7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제 정 안

한다.

- ⑥ 제2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⑦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⑨ 제5항 및 제7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6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⑩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본인가 또는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은 일반 디지털자산 발행인과 달리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발행인 인가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거래 목적으로 사용·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서 법정화폐 등과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이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액면가로 상환할 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EU의 MiCA, 미국의 지니어스법의 경우에도 전자화폐토큰 또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인은 각각 관련 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표 13]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

국 가	명 칭	정 의
EU	전자화폐토큰 (Electronic Money Token)	기존 금융법에 따라 인가된 신용기관(은행) 또는 전자화폐지침(EMD2, 전금법 유사)에 따른 전자화폐발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자
미국	지급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 미국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 부보예금기관(IDI)의 자회사로 발행 허가를 받은 자 - 연방허가를 받은 발행인 - 주(州) 허가를 받은 발행인(발행 잔액 100억 달러 미만) ※ 비금융상장사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행 가능 * 재무부 장관·연준 의장·예보 위원장으로 구성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일반 디지털자산에 비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강화된 이용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EU 및 미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제정안과 같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인가 요건을 살펴보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은 ①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하고, ②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며, ③ 전문인력, 재무건전성, 사업계획성 등을 적정하게 갖추고, ④ 환불방법 및 환불준비금 등에 관한 계획을 타당하고 적절하게 수립해야 함.

□ 다만, 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제정안은 제102조에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 관련 규정을 외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발행인의 인가 요건 중 ‘대한민국 법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외 발행인에 대한 인가 의무를 면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외 발행인이 발행한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인 인가 및 발행신고서 제출⁴²⁾ 등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제정안 제111조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해당 디지털자산에 대해 거래지원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 기준에 따른 심사⁴³⁾를 하여야 함.

- 다만, 금융위원회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가 등의 의무를 면제할 경우 발행인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어렵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이용자의 상환권 보장 등

42)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104조(발행의 신고) 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그 디지털자산의 발행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디지털자산을 발행할 수 없다.

※ 위 규정도 해외 발행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43)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111조(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및 유지심사) 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보고서를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둘째, 제정안은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 요건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일반적인 전자화폐와 달리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은 분산원장에 기반하여 전산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본금 요건을 전자화폐 발행인에 비해 완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화폐⁴⁴⁾를 발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⁴⁵⁾.

4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전자화폐"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 및 가맹점에서 이용될 것

나. 제1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수 이상일 것

라.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되어 발행될 것

마.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

45)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 및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자본금)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셋째, 금융위원회는 주요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 발행인에 대해서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제 외에도 준비자산의 관리방법, 준비자산의 구성 등 충분한 운영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음.

11.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치 및 기능

- 제정안은 법정 협회로 한국디지털자산협회 설립하여 디지털자산업자의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는 ①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적격성 평가 및 거래지원종료 심사를 위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②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2조(설립) ① 디지털자산산업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며,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회원 가입 등)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1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제125조(업무) ①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2.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 및 거래지원종료심사 4.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회원에 대한 감리 5.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6. 디지털자산업의 표준 약관의 제정 및 개정

제 정 안

7.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8.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가. 디지털자산운용인력

나. 매매권유자문인력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가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제130조(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적격성에 관한 평가

2.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종료에 관한 심사

3. 제131조에 따른 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장”이라 한다)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

3. 협회가 추천하는 4명

4.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추천하는 2명

③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평가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평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협회는 2개월 이내에 평가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 정 안

- ⑥ 제36조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⑦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다.
- ⑧ 금융위원회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⑨ 그 밖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협회는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자산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장감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
- 2. 디지털자산거래소등 간의 연계감시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 5. 제13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4명
- 3. 협회가 추천하는 4명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에서 선임

제 정 안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협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36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다.

⑧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별도의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협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우리 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당시 부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자율협의기구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공통의 거래지원 관련 내부통제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을 마련하였으며,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모범사례를 내규에 반영하여 적용 중임.

○ 한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⁴⁶⁾하고 있음.

□ 제정안은 법정협회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고, 협회 내에 거래지원적격성 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디지털자산업자는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되, 디지털 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 회원으로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자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 등도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

4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 있음.

○ 협회는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한 자율조정, 표준 약관의 제정 및 개정, 회원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과 함께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특히 협회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 등을 위해서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디지털자산시장에서의 이상거래 감시를 위한 시장감시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함.

□ 제정안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의 신청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 거래지원종료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상의 업무와 관련한 거래지원규정을 정하여야 함.

- 제정안 제110조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기 전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신청⁴⁷⁾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해당 디지털자산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⁴⁸⁾.

47)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110조(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적격성평가) 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기 전에 제130조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지원적격성평가신청을 받은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신청한 디지털자산거래소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정안 제112조⁴⁹⁾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를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가 거래지원종료 여부 등에 대해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131조⁵⁰⁾는 이러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기준 및 거래지원종료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

○ 다음으로, 시장감시위원회는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장감시규정⁵¹⁾으로 정하여야 함.

48) 다만, 제정안에서는 이러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거래지원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49)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112조(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종료) 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거래지원종료 여부 등에 대해서 심사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종료를 요청한 경우
2. 발행인(디지털자산의 발행권한을 가진 자도 포함한다)이 총 발행량 등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디지털자산의 분산원장에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디지털자산의 발행권한이 해킹 등으로 침해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50)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131조(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 ①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요청한 거래지원적격성평가 및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이하 “거래지원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협회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거래지원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적격성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종료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자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1)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133조(시장감시규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감시 및 예방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시장감시규정(이하 “시장감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제정안과 같이 디지털자산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정 협회를 구성하고, 협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거래지원 및 종료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련 업무가 가능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등과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과 같이 협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가 거래지원 등과 관련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제정안 제111조⁵²⁾는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해당 거래소등에서 거래지원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앞선 협회의 거래지원적격성평가 및 그 기준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이 특정 디지털자산을 거래지원하기 위해 거래지원적격성평가를 신청하여 심사받은 결과와 자체적으로

52)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제111조(디지털자산의 거래지원 및 유지심사) ①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거래지원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디지털자산거래소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보고서를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사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래지원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가 다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지원기준과 협회가 정하는 디지털자산거래지원규정 등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현재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제정안에 따라 협회 내의 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감시 업무의 특성, 관련 기관과의 유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은 각 거래소가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⁵³⁾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수사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협회 내의 위원회가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금융위원회는 개별 거래소별 고객·거래패턴·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회 내의 위원회가 통합 이상

5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10조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를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 감시를 수행하는 것이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자료】 스테이블코인 관련 해외 입법례(EU·美)

구분	EU (MiCA)	美 (GENIUS Act)
명칭	■ 전자화폐토큰 (Electronic Money Token; EMT)	■ 지급결제 스테이블코인 (Payment Stablecoin)
발행인 자격	■ 기존 금융법에 따라 인가된 신용기관(은행) 또는 전자화폐지침(EMD2, 전금법 유사)에 따른 전자화폐발행기관 으로 인가를 받은 자	■ 미국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 부보예금기관(IDI)의 자회사로 발행 허가를 받은 자 - 연방허가를 받은 발행인 - 주(州) 허가를 받은 발행인 (발행 잔액 100억 달러 미만) ※ 비금융상장사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 위원회의 합의가 있는 경우 발행 가능 * 재무부 장관·연준 의장·예보 위원장으로 구성
건전성 규제	■ 전자화폐 지침에서 정하는 자본금규제 적용 - (최초 자본금) 35만 유로	■ 자본금 유지, 유동성, 위험관리 의무(감독기관을 통한 규정 구체화)
준비자산 관리	■ 미상환 EMT 상당액 100% 이상 유지	■ 미상환 스테이블코인 잔액 대비 1:1 이상 유지
준비자산 구성	■ 현금 최소 30%를 신용기관 내 별도계정 예치 ■ 나머지는 저위험·고유동성 금융 상품에 투자(준거 통화와 동일 통화)	■ 현금, 예수금, 만기 93일 이하 미국채, 만기 1일 이하 RP(국채 담보), 만기 1일 이하 역RP, 위 자산에 투자하는 MMF, 연방 감독당국이 승인한 고유동성 자산, 위 준비자산의 토큰화 자산
상환의무	■ 액면가 상환청구권 보장	■ 액면가 상환의무 명시
이자 지급	■ 발행인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자 지급 금지	■ 발행인의 이자 지급 금지
해외 발행	■ EU 내 법인 설치·인가 필요 ■ 인가된 경우에만 유통	■ 미국 내 발행 희망시 인가 필요 ■ 미국 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한 경우 유통 가능
운영 실패시 이용자 보호절차	■ 복구·상환계획 수립 후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당국 통지 ■ 당국은 복구계획 실행 요구 및 상환 중단 명령 권한 보유	■ 준비자산은 파산재산에서 제외되며, 법원은 청문회 개최일로부터 14일 내 상환 명령 가능

문 의 처
02)6788-5111
02)6788-5106